

기본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내규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회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교회의 자립성장과 발전의 기금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운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개체교회의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1. 기본 조직
 - 1) 당연직 : 연회 감독, 연회 총무, 연회 서기,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 2) 교역자 7명
 - 3) 평신도 7명
2. 분과 조직
 - 1)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분과
 - 분과위원 /
 - 2) 지원교회 선정 분과
 - 분과위원 /
3.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및 교체) 위원의 임기 및 교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회 감독, 연회 총무, 연회 서기, 국내외선교사업위원장은 당연직이기에 임명된 후 즉시 교체한다.
3. 교역자 7명과 평신도 7명은 가급적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 4명씩은 신임 감독 선출 후에 교체하고, 각 3명씩은 다음 해 연회 후에 교체하도록 한다.

제4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 관리와 운용
2.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3. 지원 대상 교회 선정
4. 기타 위원회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

제 2 장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제5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조성)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연회부담금 : 부담금 비율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원금 (교회, 단체, 개인)
3. 감리회 본부 지원금 : 감리회 본부 지원금 중 일부로 충당한다.
4. 기타 수입

제6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관리)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관리는 연회본부에서 한다.

제7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운용)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운용은 해당 분과의 제안으로 전체 위원 출석 2/3 이상 찬성 후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제 3 장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 종목 및 요건

제8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 종목)

1. 교회 건축부지 매입 기금
2. 교회 건축 기금
3. 교회 예배당 매입 기금

제9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 한도액)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제10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 요건)

1.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교회는 감리회 설립 규정에 맞는 교회여야 한다.
2.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은 성장한 증거나 성장 요인이 있는 교회에 한한다.
3.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지원 종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교회 건축부지 매입
 - (1) 교회 건축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하여야 한다.
 - (2) 지원받는 교회는 교회 건축부지 매입비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교회 건축
 - (1) 건축주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하여야 한다.
 - (2) 지원받는 교회는 건축비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교회 예배당
 - (1) 매수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하여야 한다.
 - (2) 지원받는 교회는 매입비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 및 서류

제11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은 구역회의 결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의 소정 서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당해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2.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 시 연대보증은 1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5명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3.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신청은 매년 1월에 공시하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지원교회를 선정 발표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심사한다.

제12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신청 서류) 교회 건축 부지 또는 건축을 위해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급처	제출 서류 목록	부수
등기소	1. 교회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1
	2. 건축물관리대장	1
연회본부	1. 담임자 재직증명서(연회)	1
교회	1. 구역회 회의록(의장 위임 불가, 감리사 및 구역회원 연서 날인)	1
	2. 전년도 결산서 및 신년도 예산서	1
기타	1.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대출신청서 (소정양식)	1
	2. 상환계획서 (소정양식)	1
	3. 감리사 추천서	1
	4. 근저당 설정 및 해지	

제 5 장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상환

제13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의 상환 시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이 상환해야 한다.

1. 2010년 이전에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는 15년으로 한다.
2. 2010년 이후 지원받은 교회는 10년으로 한다.
3. 2017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교회는 5년 거치 3년 안에 상환한다.
4. 2025년 이후 지원받을 교회는 거치 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원금을 60회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연회 지정계좌(농협 355-0053-2105-63 중부연회)로 상환한다.

제14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상환)

1. 지원금 상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지방회 및 연회의 임원·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한다. (교역자 및 평신도 포함)
2.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을 지원받은 교회들은 매년 별도 준비된 <상환 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3.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상환이 잘 진행되도록 매년 2월 중에 1차례 이상 상환 실사 및 계획 이행 모임을 갖도록 한다. 이 모임에는 지원받은 교회 담임자,재무부장과 소속한 지방회의 감리사도 동석하도록 한다.
4. 상환 불이행 시 기본재산관리특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연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위원회에 기소할 수 있다(장정 제1404단 제4조 4,5항).

제15조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가산금)

1. 상환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금이 남아 있을 경우 연체 가산금은 연 5%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16조 (내규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17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전체 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8조 이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2020년 4월 16일로 즉시 시행한다.

제19조 이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2025년 3월 28일로 즉시 시행한다.

제20조 이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2025년 5월 29일로 즉시 시행한다.